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23

발의연월일 : 2026. 11. 3.

발 의 자 : 전현희・김동아・장종태
문진석・유동수・민병덕
박상혁・안태준・강준현
김용만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지명령 위주의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공동행위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

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공공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경우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감시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다.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하여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4조).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중지”를 “중지,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를 “제4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을 “과징금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조치나 과징금을”을 “과징금을”로, “따른 시정조치나”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를 “과징금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요청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시정조치) ①----------중지,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반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 영업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 ---------- ---------- ------제43조에----------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	② ----------과징금을---

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을----------따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징금이----------.